



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

농림부, 살처분 보상금 지급 현실화

가축을 살처분 할 경우, 가축의 제 값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농림부는 지난 4월 6일 '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'을 개정 고시하고, 기존의 상한선이 있는 살처분가축 보상금 제도를 없애고, 실제 그 당시의 산지가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앞으로 전염병으로 돼지를 살처분할 경우 자돈(30kg이하)은 축협이 조사하는 산지가격으로, 육성돈(31kg~60kg)과 성돈(61kg이상)은 산지 성돈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으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농림부가 이날 개정 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□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

1. 살처분한 가축

(단위 : 원)

축종별	구 분	상 한 가 격	비 고
돼지	새끼돼지(30kg이하)	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	예) 1,800/생체중×50kg=9만원 감염의심돈 처분시키기 위한 것 노폐돈은 도축하여 경매가 한
	육성돈(31~60kg)·성돈(61kg이상) :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	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	
	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든	250,000	
	모든 도태장려금	100,000	

※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은 해당 가축 보상금 평가 당시 축협조사월보(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행 월보) 최신호를 기준으로 할 것

비고1. 돼지오제스키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 :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

비고2. 및 비고3.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2. 도태보상금 지급기준

(단위 : 원/두당)

축종별	구 분	도태보상금 기준액	비 고
젖소	송아지	200,000	6개월령 이상에 한함
	초임만삭	500,000	
	초산우	400,000	
	다산우(2-5산)	300,000	
	노산우·기타	200,000	
돼지	모든	고기는 상인판매 할수 있음 100,000	축산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모든